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 사례1

의결번호	제2016-33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월 12일 사회12면
기사제목	초등 5학년 딸, 우울증 엄마와 ‘쓰레기집’서 1년

1. 보도내용

초등 5학년 딸, 우울증 엄마와 ‘쓰레기 집’서 1년 ... 다가구주택 지하방에서 6t 쓰레기 제하의 사진

「40대 초반의 엄마와 초등학교 5학년 딸(11)이 다가구주택 지하방에서 6t이나 되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1년 가까이 살아오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사글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은 도시가스조차 오랜 기간 끊겨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주소가 드러난 주택 외관 사진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40대 엄마와 초등학교 딸이 사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방에 쌓여 있던 쓰레기가 수거대 화물차에 실려 있다. 조그만 집에서 1t 트럭 6대분인 6t의 쓰레기가 나왔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모녀의 방을 치우기 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 부천시 제공

초등 5학년 딸, 우울증 엄마와 ‘쓰레기 집’서 1년

생활실태조사 중 복지사가 발견
이혼 후 공공근로로 근근이 생계
가스도 끊겨 냉골·집에선 잠만
주민센터서 집안 소독·긴급생계비

40대 초반의 엄마와 초등학교 5학년 딸(11)이 다가구주택 지하방에서 6t이 나 되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1년 가까이 살아오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사글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은 도시가스조차 오랜 기간 끊겨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모든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던 중 모녀만 사는 집이 의심스러웠다. 주

부 A씨가 유독 가정 방문을 꺼리고 밖에서만 만나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사는 설득 끝에 지난해 12월 7일 집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방과 부엌은 페트병과 종이 박스, 비닐 등 온갖 생활 쓰레기로 꽉 차 있었다. 발견 당시 A씨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해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했으나 1주일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

결국 지난 6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치운 쓰레기는 봉고 트럭 6대분인 약 6t에 달했다. 이 중에는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 폐전자제품도 있었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한 덕분에 약취가 나지 않아 아동센터나 이웃들도 모

녀의 생활을 모르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 주부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공공근로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고, 딸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녁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녀는 저녁 때마다 도서관이나 대형서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후 10시쯤 귀가해 방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잠만 잤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는 집안을 소독하고 체납가스요금을 포함해 긴급생계비로 69만원을 지원해줬다. 부천시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우울증에 빠져 쓰레기를 방치해 온 것으로 보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 사례2

의결번호	제2016-214호
매 체 명	인터넷 스포츠조선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5월 4일자 라이프면
기사제목	‘엄마 없는 어린이 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1. 보도내용

「‘엄마 없는 어린이 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제하의 사진

‘엄마 없는 어린이 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기사입력 2016-05-04 06:17:53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진 아동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3

의결번호	제2016-296호
매 체 명	우먼센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호 218~224면
기사제목	“톱스타 김민희 유부남 홍상수 감독과 충격 열애”

1. 보도내용

- 1) 「홍상수 아내·김민희 어머니 카톡 대화의 재구성」 제하의 카톡 대화창
 - 2) 「(전략)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뒤에 김민희가 잔뜩 성난 표정을 하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팔을 잡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녀가 제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죠!’라고 했어요. 그 순간 화는커녕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진부한 대사를 하니?’ 저도 쏘아붙였죠. 실랑이가 길어지자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정신 나간 여자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김민희가 소리치더군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중략)
- 늦은 밤, 남편이 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어요. 느낌이 이상해 몇 분 뒤 저도 따라 나갔죠. 그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 산책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남편은 그길로 집을 나갔다.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다. (중략)
-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 “구구절절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힘든 게 사라지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그 일기장을 집에 두고 간 게 맘에 걸렸는지 딸에게 일기장을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 “안되겠다 싶어 김민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그녀에게 ‘급한 일이니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전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못 참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30초 만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나간 뒤 처음으로 남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후에도 남편과 통화할 일이 있으면 그녀를 통해 하곤 했어요.” (중략)
- “남편은 딸을 끔찍하게 아꼈지요. 그런 남편이 딸에게 ‘더 이상 유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업계에 파다해지자 김민희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녀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중략)
- 최근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상수 씨, 내가 꼭 이혼을 해줘야지 되겠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주면 우린 좋지..., 30년이면 충분히 같이 잘 살았잖아.”

‘우리’래요. 30년을 같이 산 세계...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스쳐지나가는 것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있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영화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불륜 사실을 밝히면서 감독 부인과 여배우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내용 및 감독의 일기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4

의결번호	제2016-881호
매 체 명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1월 28일자 A1면
기사제목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1. 보도내용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제하의 사진

「(전략)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에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부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국정농단 개입 의혹’ 김기춘 前실장은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에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부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차 씨가 최 씨의 지시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간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로 차 씨를 만났지만 최 씨를 모르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제2장 피의자 신원공개

▶ 사례5

의결번호	제2016-46호
매 체 명	인터넷 일요시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6만 6000명 성매매 리스트 대해부

1. 보도내용

「6만 6000명 성매매 리스트 대해부」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매수자 의심명단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성매수 혐의자들로 의심되는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종 > 사회 > 사건/사고

6만6000명 성매매 리스트 대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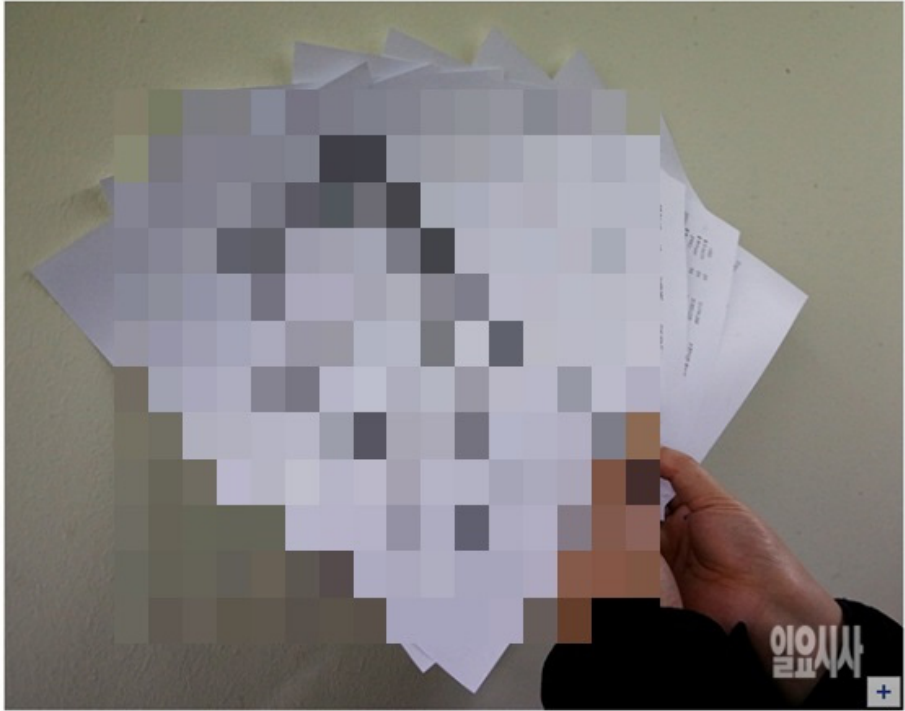
난교파티 벌인 교수님 기구 좋아하는 사장님

양동주 기자 | djyang@ilyosisa.co.kr

승인 2016.01.27 10:42:33

[+](#)
[-](#)
[📄](#)
[📷](#)
[📄](#)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무려 6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밀스러운 문건 하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서 곳곳에 이해하기 힘든 각종 은어와 숫자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사회 고위층을 암시하는 신원 정보를 비롯해 석연찮은 구석이 넘쳐난다. 아님나 다름까 성매매 리스트로 짐작되는 이 문건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로 치부될 지 두고 볼 일이다.



▶ 사례6

의결번호	제2016-594호
매 체 명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특별감찰팀, ‘스폰서 부장검사’ 고교 동창 사흘째 고강도 조사

1. 보도내용

「김형준 부장검사 특별감찰팀은 8일에도 그의 고교 동창 김○○(○○·구속)씨 등을 사흘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하 생략)」

사회 특별감찰팀, '스폰서 부장검사' 고교 동창 사흘째 고강도 조사
 기사등록 일시 [2016-09-08 15:16:25] 금인량 기자 E3100@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준 기자 = 한직 부장검사에 대해 공음과 반동을 겪었고, 사건을 성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구속)씨를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전 고지 절차를 받기 위해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05. thehoonim@newsis.com 16-09-05

부팀장에 수원지검 형사2부장 이선봉 부장검사 투입... 수사 전환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김형준 부장검사 특별감찰팀은 8일에도 그의 고교 동창 김○○(○○·구속)씨 등을 사흘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씨 등 관련자들을 이날에도 대검으로 불러 집중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 사례7

의결번호	제2016-50호
매 체 명	뉴스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③‘친권’의 덫 ... 학대아동에겐 ‘공포의 집’

1. 보도내용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최초 용의자는 피해아동 ○○(당시 ○세)양의 친언니 A(○○)양이었다. (중략)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던 그는 계모 임모(38)씨와 친부 김모(40)씨로부터 격리되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의 성명과 사망 당시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외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고소고발 보도

▶ 사례8

의결번호	제2016-362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14일자 13면 2016년 7월 16일자 8면 2016년 8월 24일자 12면
기사제목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 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 ...李측 "사실 아니다" 배우 엄태웅, 마사지업소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피소

1. 보도내용

- (1) 「(전략)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중략)
박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2)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사진)씨가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이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사실이 없지만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소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3)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영화배우 엄태웅(사진)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략)
엄씨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실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충분한 증거 없이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명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의 보도는 그것이 중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해 최소한 피고소인의 입장을 듣고, 그 비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며, 피고소인이 비난된 행위를 이미 행했다고 부당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이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소장 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범죄 혐의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로 인해 독자들은 피고소인이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후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고소인이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사실 및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

20대 여성, 직접 증거물 제출 소속사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 타협 안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3일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이모(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직접 경



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등을 분석해 수사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 소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약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李측 “사실 아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사진)씨가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



은 A씨를 경찰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로 안내해 증거물을 채취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마친 상태다. 조만

간 이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사실이 없지만 수사에는 A씨를 경찰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로 안내해 증거물을 채취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마친 상태다. 조만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소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임태웅, 마사지업소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피소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영화배우 임태웅(사진)씨에 대해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정남지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

소에서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날 “남자 연예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지난 22일 이첩했다. 사건 당일 임씨는 혼자 이 업소

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됐으며, 수감 상태에서 임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은 수사 초기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고소 사실에 대해 사건 관계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5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사례9

의결번호	제2016-227호
매 체 명	아시아투데이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1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카드뉴스] 법도 경찰도 없다, '신안' 지옥의 섬? - 염전 노예부터 여교사 성폭행까지

1. 보도내용

「(전략) 지난달 신안군 ○○도 섬에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여교사 A씨가 섬 주민 3명을 상대로 윤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전 국민이 공노,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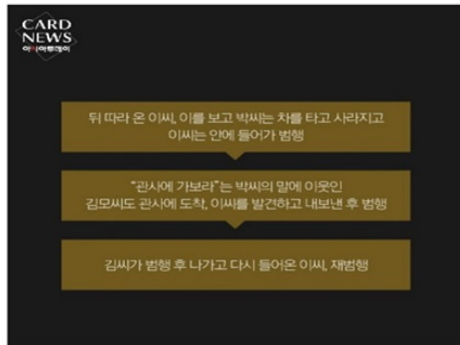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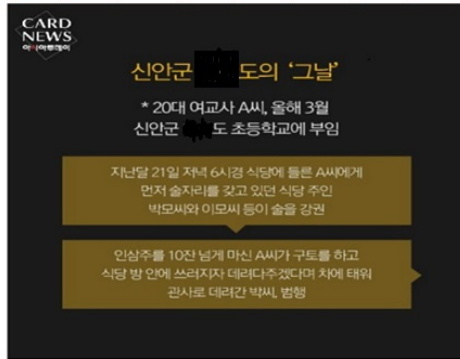
위 기사는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도 소재 초등학교의 여교사임을 밝히고 연령대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카드뉴스] 법도 경찰도 없다, '신안' 지옥의 섬? - 염전 노예부터 여교사 성폭행까지

김경희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06. 10. 00:00



제6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 사례10

의결번호	제2016-2호
매 체 명	포천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2월 15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파출소, 집 나간 치매노인 가족에 인계

1. 보도내용

「○○ 파출소, 집 나간 치매노인 가족에 인계」 제하의 사진

「포천경찰서 ○○ 파출소는 지난 11일 15시경 ○○면 ○○리 거주 김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처가 ○○세인 치매노인인데, 신발도 신지 않고 집에서 나갔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집 주위 산지 등을 수색, 2시간 만에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파출소의 수색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치매환자인 피구조자의 성, 나이, 초상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 사례11

의결번호	제2016-238호
매 체 명	자주시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5월 19일자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1. 보도내용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탈북여종업원들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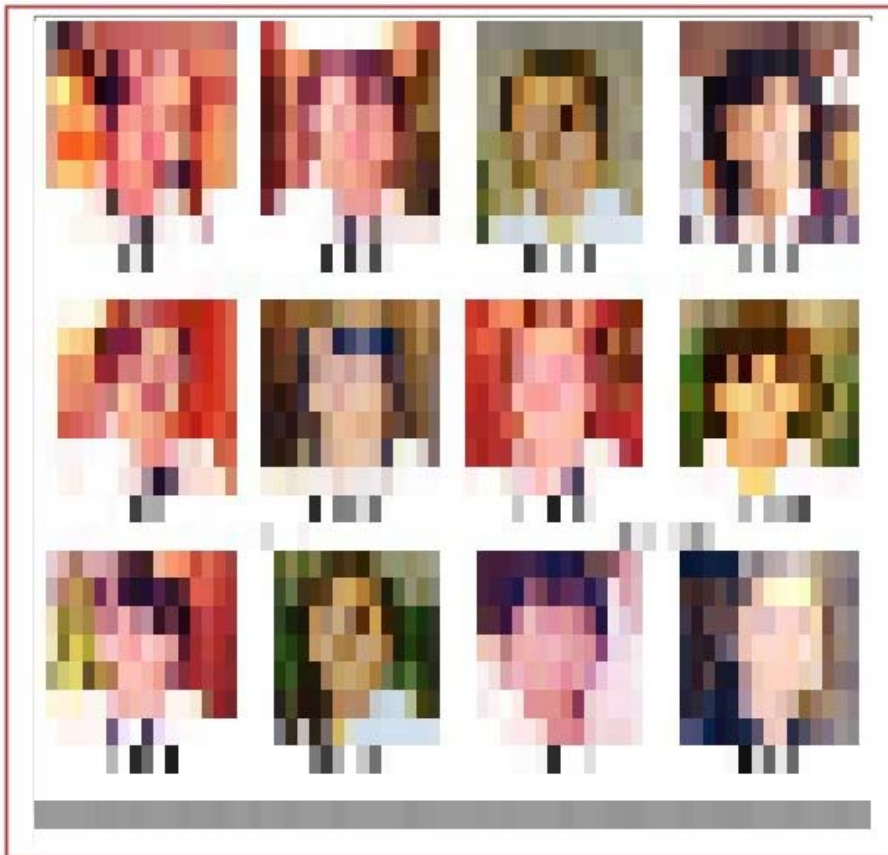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기사입력: 2016/05/19 [03: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6년 5월 18일

총선을 5일 앞둔 4월 8일,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긴급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중국을 나와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대북독자제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단체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례12

의결번호	제2016-355호
매 체 명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8월 19일자 정치면
기사제목	태영호 공사, 아들의 게임 ID는 “○○○○?” 가족들 누군가보니 ‘귀족혈통!’

1. 보도내용

「태영호 공사, 아들의 게임 ID는 “○○○○?” 가족들 누군가보니 ‘귀족혈통!’」 제하의 사진 「(전략) 18일 방송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태영호 공사의 차남은 세계 랭킹 ○위를 기록한 영국 명문대에 곧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런던의 부촌에 위치한 ○○○○칼리지. (중략)

태영호 공사의 차남 태○ 군은 올 가을 이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올해 ○○살로 런던 서부의 한 고등학교에 다닌 태 군은 ○○과 ○○○과에서 A학점을 받았던 수재.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차남의 초상과 함께 성명, 나이 및 입학 예정 학교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태영호 공사, 아들의 게임 ID는 〇〇〇 〇〇 가족 들 누군가보니 '귀족혈통!'

이준영 기자 | 승인 2016.08.19 08:50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7

사회적 법의 침해



제1장 범죄수법 상세모사

▶ 사례13

의결번호	제2016-861호
매 체 명	인터넷 일요시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0월 26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충격〉 아무나 만드는 사제총 제조법

1. 보도내용

「(전략) 실제로 유튜브브서 ‘○○○○’ ‘○○○○○○’ 등으로 검색하면 3,640만건의 결과가 나열된다. 흔히 생각하는 총에서부터 일반적인 볼펜으로 만드는 총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재료도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색어에 ‘○○○○’ 등을 추가하면 폭죽이나 화약 제조법도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철제 탄환을 사용하는 엽총 제작법까지 등장한다.

‘○○○○○○’이라는 제작자가 올린 동영상은 약 20분 동안 쇠파이프와 쇠막대, 스프링 등의 재료를 사용해 똑딱 총기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총기를 통해 발사된 구슬은 나무 합판을 부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 총기 제작법이 상세히 묘사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 방법 및 동영상 제작자를 적시하면서, 사제 총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사제 총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성관련 보도

▶ 사례14

의결번호	제2016-260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 ... 학부형이 집단 강간

1. 보도내용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 ... 학부형이 집단 강간」의 제목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제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자살 관련 보도

▶ 사례15

의결번호	제2016-326호
매 체 명	경기매일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 25일자 15면
기사제목	○○시청 공무원, 옥상서 목 매 숨져

1. 보도내용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청 옥상서 자살 충격

○○시청이 ○급 이하 직원에 대해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 인사에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시청 ○○출장소 직원 K 모(○○세)씨가 시청 본관 3층 옥상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중략)

○○○○관리 ○급인 K씨는 동네 ○○시설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이번 전보인사에서 ○○출장소로 발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일단 K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 나이, 직급, 근무지,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16

의결번호	제2016-783호
매 체 명	아주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9월 6일자 23면
기사제목	“서울로 직장 구하러 간다던 딸아...” 안산 사무실서 남자 3명과 숨진채 발견

1. 보도내용

「(전략) 발견 당시 A씨 등은 사무실 안에 놓아둔 ○○가스 용기에 호스를 연결한 뒤 비닐 봉지를 뒤집어쓴 상태였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스를 호스에 연결하고 비닐을 뒤집어쓰는 자살 방법 및 자살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마약 관련 보도

▶ 사례17

의결번호	제2016-170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4월 21일 10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 밀반입 수 억원 어치 유통

1. 보도내용

「담배에 몇 방울 뿌려 피우는 신종마약 ‘○○○○’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H씨는 손세정제로 위장한 ‘○○○○’을 국제우편으로 이 씨에게 부쳤다. 이 씨는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이를 ○ml씩 안약통에 나눠 담은 뒤 ○○만 ~ ○○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팔았다. 이 씨 일당은 유학생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을 권하고 SNS에 판매 게시물을 올렸다. 구매자를 섭외하면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다단계식 영업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판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에 유통된 ‘○○○○’은 ○○○ 성분 합성 대마 계열 마약이다. 2014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담배에 ○○ 방울쯤 떨어뜨려 간단하게 피울 수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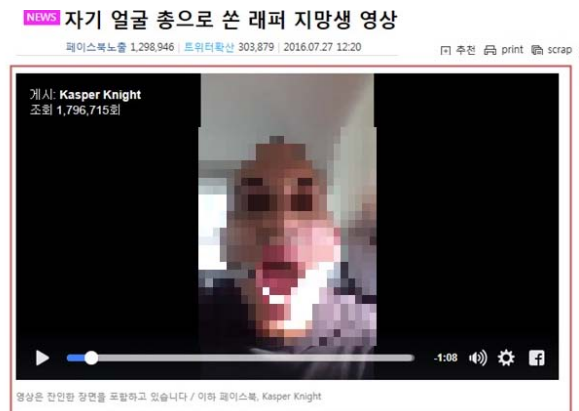
제5장 충격, 혐오 보도

▶ 사례18

의결번호	제2016-336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 27일자 세상에 이런 일이면
기사제목	자기 얼굴 총으로 쏜 래퍼 지망생 영상

1. 보도내용

「자기 얼굴 총으로 쏜 래퍼 지망생 영상」 제하의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학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 한다.

제6장 기사형 광고

▶ 사례19

의결번호	제2016-203호
매 체 명	뉴스엠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4월 5일 헬스면
기사제목	성형 한류에서 안티 에이징까지 세계로

1. 보도내용

「김○○ 기자」

「(전략) 강남구 신사동에 단독빌딩으로 위치한 ○○○성형외과병원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21개층 빌딩 전체 규모의 의료시설과 고객중심의 호텔급 인테리어로 명성이 자자하다. (중략)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성형외과에서는 ‘V라인 사각턱수술’과 3차원 광대회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V라인 사각턱수술은 기존 U라인 사각턱수술에 턱 끝의 넓이를 축소시켜 주는 수술을 추가함으로써, 양 옆의 각진 턱을 깎아 내는 동시에 턱 끝을 V자 모양으로 날렵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이다. V라인의 핵심인 턱 끝도 동시에 가름하게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안면윤곽수술의 하나인 광대뼈 축소술 중 ‘3차원 광대회전술(3D malar rotation)’은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깎아 내기만 하거나 단순히 옆 광대만 넣어주는 방식의 수술법이 아니라 광대가 내측으로 회전하면서 이동하여 광대뼈의 실제 볼륨 축소와 구조 개선이 가능한 수술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